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 한병도 · 김영배 · 정일영

김승원 • 이수진 • 이형석

이용빈 · 김민철 · 전용기

최기상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의 발급·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18조의30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"를 "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기소중지된"을 "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된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"를 "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"을 각각 "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"로 한다.

제26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불기소처분이"를 "사법경찰관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가"로 한다.

다만, 제2호의 경우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 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8조의30(국외선거범에 대한	제218조의30(국외선거범에 대한
여권발급 제한 등) ① 외교부	여권발급 제한 등) ①
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	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	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
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「여권	<u>는 사법경찰관</u>
법」에 따른 여권의 발급・재	
발급(이하 "여권발급등"이라	
한다)을 제한하거나 반납(이하	
"제한등"이라 한다)을 명하여	
야 한다.	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	2
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	
는 죄를 범하여 <u>기소중지된</u>	<u>기소중지 또는</u>
사람	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된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	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
<u>검사가</u>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	또는 사법경찰관이
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	
그 요청사유, 제한기간 또는	
반납 후의 보관기간(이하 "보	
관기간"이라 한다) 등을 적은	
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	<u>.</u>
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 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하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⑤・⑥ (생략)
- 제262조의3(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 ①·② (생략)
 -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
또는 사법경찰관은
4
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
또는 사법경찰관은
<u>.</u>
⑤·⑥ (현행과 같음)
1262조의3(선거범죄신고자에 대
한 포상금 지급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③

한다. <단서 신설>

- 1. (생략)
- 2. <u>불기소처분이</u> 있는 경우
- 3. (생략)
- ④ ~ ⑦ (생 략)

- --. <u>다만</u>, 제2호의 경우 다시
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
 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
 제외한다.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<u>사법경찰관의 불송치나 검</u> <u>사의 불기소가</u> -----
- 3. (현행과 같음)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